



NEOGEN®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MSDS 번호: 자료없음

최초 작성일자: 2025-10-03 버전: 1.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 |
|-----------|--------------------------------|
| 제품 형태 | : 혼합물 |
| 상품명 | : Acid Hydrolysed Casein |
| EC 번호 | : 265-363-1 |
| 제품 코드 | : NCM0239 |
| 제품 유형 | : Food Safety -- [Food Safety] |
| 기존화학물질 번호 | : KE-05-0318 |
| 화학명 | : Caseins, hydrolyzates |
| 파트 번호 | : NCM0239 700004681 700004683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

- 공급업체

| | |
|---------|--|
| ○ 회사명 | : Neogen Corporation |
| ○ 주소 | : (48912) United States of America Michigan Lansing 620 Leshar Place |
| ○ 전화 | : 800.234.5333 |
| ○ 응급 정보 | : 24 hours: Medical: 1-800-498-5743 (U.S. and Canada) or 1-651-523-0318 (international) Spill/CHEMTREC: 1-800-424-9300 (U.S. and Canada) or 1-703-527-3887 (international) |
| ○ 전자우편 | : sds@neogen.com |
| ○ 웹사이트 | : https://www.neogen.com/ |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자료없음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GHS KR)

해당없음

○ 신호어 (GHS KR)

해당없음

○ 유해·위험 문구 (GHS KR)

해당없음

○ 예방 조치 문구 (GHS KR)

해당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해당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 형태 : 혼합물

이 혼합물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에 따라 물로 눈을 헹구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량의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증상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물 분무.
건조 분말.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강한 물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위험 : 화재 위험 없음.
- 폭발 위험 : 직접 폭발 위험 없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소방 지침 : 안전 거리에 있는 보호 구역에서 화재 진압.
호흡기 보호구를 비롯한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화재 지역에 들어가지 마시오.
- 화재 진압 중 보호 :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는 조치를 취하지 마시오.
자급식 호흡보호구.
전신 보호복.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권장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유출지역을 환기시키시오.
-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는 조치를 취하지 마시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8 항(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을 참조하십시오.
- 불필요한 인원은 대피시키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깨끗한 샵을 사용하여 건조 용기에 물질을 넣고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덮습니다.
- 장치를 활용하여 회수하십시오.
- 고형물 및 고형 잔류물은 인가된 시설에서 폐기하십시오.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안전취급요령 : 작업장의 환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십시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위생 조치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제품 취급 후 반드시 손을 씻으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기술적 조치 : 열을 피해서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보관 조건 : 저온으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 포장재 : 제품은 항상 원래의 포장과 동일한 재질의 포장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보관 온도 : 2 - 30 °C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해당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작업장의 환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십시오.
- 환경 노출 관리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개인보호구

개인 보호구

권장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불충분할 경우, 적절한 호흡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눈 보호

보안경

손 보호

안전 장갑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신체 보호 장비 기호:



9. 물리화학적 특성

| | |
|---------------------------|---------------|
| 가) 외관 | : 분말. |
| 물리적 상태 | : 고체 |
| 색상 | : 베이지색, 황백색. |
| 나) 냄새 | : 특유의 냄새. |
| 다) 냄새 역치 | : 자료없음 |
| 라) pH | : 6.5 – 7.2 |
| 마) 녹는점/어는점 | : 자료없음 / 해당없음 |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 자료없음 |
| 사) 인화점 | : 93.3 °C |
| 아) 증발 속도 | : 자료없음 |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 비인화성. |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해당없음 |
| 카) 증기압 | : 자료없음 |
| 타) 용해도 | : 물에 용해. |
| 파) 증기밀도 | : 자료없음 |
| 하) 비중 | : 자료없음 |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Kow) | : 자료없음 |
| 너) 자연발화 온도 | : 해당없음 |
| 더) 분해 온도 | : 자료없음 |
| 리) 점도(동점도) | : 해당없음 |
| 점도(역학점도) | : 자료없음 |
| 머) 분자량 | : 자료없음 |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이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보관 및 운송 조건에서 반응성이 없음.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임.
정상 사용 조건에서 알려진 위험 반응 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권장 보관 및 취급 조건에 따른 조항 없음(섹션 7 참조).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한 분해 산물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경구 : 분류되지 않음
피부 및 눈 접촉 : 분류되지 않음
흡입 : 분류되지 않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경구):

분류되지 않음

급성 독성 (경피):

분류되지 않음

급성 독성 (흡입):

분류되지 않음

Acid Hydrolysed Casein

혼합물의 100 % 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급성 유독성 성분 (경구)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합물의 100 % 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급성 유독성 성분 (경피)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합물의 100 % 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급성 유독성 성분 (흡입 (분진/미스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호흡기 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피부 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독성:

분류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 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흡인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 Acid Hydrolysed Casein | |
|------------------------|------|
| 점도(동점도) | 해당없음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생태학 - 일반 : 이 제품은 수생 생물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환경에 장기적 악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음.
- 수중 환경에 유해, 단기 (급성) : 분류되지 않음
- 수중 환경에 유해, 장기 (만성) : 분류되지 않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Acid Hydrolysed Casein | |
|------------------------|--------------|
| 잔류성 및 분해성 | 신속하게 분해되지 않음 |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마. 기타 유해 영향

오존층 유해성 : 분류되지 않음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지역 폐기물 규정 :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폐기물 처리법 : 허가된 수거업체의 분류 지침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제품/포장 폐기 권고사항 :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준수.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하수 처리 권장 사항 :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추가 정보 : 빈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RTDG / IMDG / IATA 에 따름

| UN RTDG | IMDG | IATA |
|-------------------------|---------|---------|
| 가. 유엔 번호(UN No.) | | |
| 해당없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 |
| 해당없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
| 해당없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라. 용기등급 | | |
| 해당없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마. 해양오염물질 | | |
| 해당없음 | 규제되지 않음 | 규제되지 않음 |
| 자료없음 | |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자료없음

Acid Hydrolysed Casein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EU 규제정보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REACH 부속서 XIV (허가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 작성일자

2025-10-03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버전 : 1.0

최종 개정일자 : 자료없음

라. 기타

자료없음

본 정보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며 보건, 안전 및 환경 요건에 대해서만 제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특수한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